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셋째자녀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을 규정하였으나,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자 셋째자녀 이상 건강보험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함에 따라 셋째 자녀 이상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임.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구미시에서 출생한 셋째 자녀 이상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신생아 1인당 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지난 11년간 셋째아 이상 신생아 3,508명에 대하여 21억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실제 보상금액은 약 1억7천만원이며 보상률은 약 7.8%로 저조한 수준임.
-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보험 가입률은 87%로 신생아의 상당수가 태아보험 등 관련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중복보상 가능한 담보(임원일당 또는 진단비 정도)만 보장이 가능하여 만족도 역시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매년 전체 신생아 중 약 8~10%에 해당하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만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투자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하는 대신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